

#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정관 변경(안)

- ◆ 조례 제정에 따른 근로자이사제 도입으로 노·사간 경영 성과와 책임을 공유하여 경영 투명성 및 시민서비스 향상
- ◆ 안전분야의 신규 외주사업 의사결정 절차 제도화를 통해 책임성 제고 및 시민·근로자의 안전관리 강화

## I 관련근거

- 「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 ('16.9.29)
- 투자·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 수립 시행 안내 (市, '16.10.14)
- 「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 ('16.9.29)
- 투자·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 알림 (市, '16.7.28)
  - 신규 외주, 안전요인 내재업무 재계약 시 이사회 의결 의무화
- 제300회 임시이사회 도시철도공사 정관 개정(안) 원안의결 ('16.10.27)

## II 추진내용

- 「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」 반영
  - 비상임이사의 정수 조정 ⇨ 8인 이내 → 10인 이내
    - 정관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근로자이사 2명 도입

현 행	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8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.
개 정	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10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.

- 근로자이사의 자격기준, 임기, 결격사유, 교육훈련 명문화
  - 자격기준 : 공사 소속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

현 행	-
개 정	(신설) 공사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(근로자이사에 한한다.)

- 임기 :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근로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

현 행	-
개 정	(신설) 다만,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근로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

- 결격사유 : 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」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제2호」에 해당하는 경우

현 행	-
개 정	(신설) 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」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」(근로자이사에 한한다.)

**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】**

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,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.

**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】**

사용자라 함은 사업주,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.

- 교육훈련 : 이사로서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학습프로그램 및 편의제공

현 행	-
개 정	(신설) 공사의 사장은 근로자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·훈련 등 각종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
- 「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」 반영

- 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 목적의 업무 종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

현 행	-
개 정	(신설) 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.

- 「투자·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 알림」 반영

- 이사회 의결사항 추가 ☞ 안전분야 외주사업 의사결정 절차 강화
  - 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·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

현 행	-
개 정	(신설) 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·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

- 「이사회운영규정」 과 일치토록 정비

- 이사회 의결사항 추가
  -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현 행	그 밖에 업무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
개 정	기타 의장 또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기 개정사항(소처제 시행) 반영

현 행	~ 간사는 공사에서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<u>팀장</u> 으로 한다.
개 정	~ 간사는 공사에서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<u>처장</u> 으로 한다.